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6. 1. 11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- 결정(변경)취지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- 위 치 : 서구 공촌동 275-6번지 일원
- 면적 또는 규모

○ 도로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당초	소로	3	20	8	국지 도로	293	공촌동275	중로2-39	일반 도로	공촌동	2005.4.1	
변경	중로	3	701	8~12	국지 도로	293	공촌동275-6	중로2-39	일반 도로	공촌동		

○ 도로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3-20	중로3-701	- 도로 일부폭원 확장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 - 폭원(B) = 8.0m → 12.0m	도로 내 차도폭 부족에 따른 통행 불편조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, 쾌적한 차로환경을 조성하여 통학 학생의 이용편의를 위함.

- 지형도면 : 게재생략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, <http://luris.mltm.go.kr/> 열람 가능)

